

**투자위험등급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마이애셋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마이애셋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ai.co.kr](http://www.mai.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3년 2월 2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3년 3월 15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 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  
[모집(매출) 총액] 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www.mai.co.kr](http://www.mai.co.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
  - 가. 책임투자운용인력
  - 나. 최근 3년간 책임투자운용인력의 변동 여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가. 일반위험
  - 나. 특수위험
  - 다. 기타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재무정보
  - 나. 대차대조표
  - 다. 손익계산서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나. 주요 업무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나. 수시공시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94920)									
종류형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종류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4070	19053	94921	94922	94923	94924	96567	94925	94926	9492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용어에 관한 사항은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0 조 좌

주 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입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co.kr](http://www.kofia.co.kr)) 및 집합투자업자([www.mai.co.kr](http://www.mai.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모집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94920)									
종류형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종류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4070	19053	94921	94922	94923	94924	96567	94925	94926	94927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주요내용
2006. 01. 17.	최초 설정
2008. 09. 11.	운용전문인력 변경(이복상→주식운용팀)
2008. 09. 24.	투자신탁명칭 변경(마이애셋징기스칸주식형투자신탁→마이트리플스타주식투자신탁), 채권 및 어음 투자등급(신용등급) 상향조정, 판매회사 보수 인하
2008. 10. 22.	장기주식형 적립식 세제혜택 적용
2009. 03. 02.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SC 제일펀드서비스→외환펀드서비스)
2009. 03. 30.	운용전문인력 변경[주식운용팀(한상수, 김우식)→한상수]
2009. 05.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투자신탁명칭 변경 (마이트리플스타주식투자신탁 →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009. 05. 25.	-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 모집예정금액(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 변경
2010. 01. 11.	- 종류 A-e 수익증권 신설 및 일부 내용 업데이트
2010. 10. 25	판매보수 인하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2011. 03. 02	운용전문인력 변경[한상수→전성문]
2011. 05. 04	운용전문인력 변경[전성문→김준기]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하여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마이애셋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5층 02-3774-6114
----------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운용인력

### 가. 책임투자운용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규모	
김준기	1966	자산운용본부 본부장	45 개	4,896 억	- 1999 ~ 2008 한화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 - 2008 ~ 2010 새마을금고연합회 주식운용팀장 - 2011 ~ 현재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책임투자운용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2013.02.28.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펀드 수	운용규모(억원)
3	141

### 나. 최근 3년간 책임투자운용인력의 변동 여부

책임운용역	운용기간
주식운용팀(한상수, 김우식)	2008.09.11. ~ 2009.03.30.
한상수	2009.03.31. ~ 2011.02.28.
전성문	2011.03.01. ~ 2011.05.03.
김준기	2011.05.04. ~ 현재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1. 주식	60%이상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2.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어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기업어음증권(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주권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7. 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18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0%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9. 환매조건부매도	채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	
10.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대출은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예치의 예치는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항 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는 제외한다)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li> <li>•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상기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자산유동화</li> </ul>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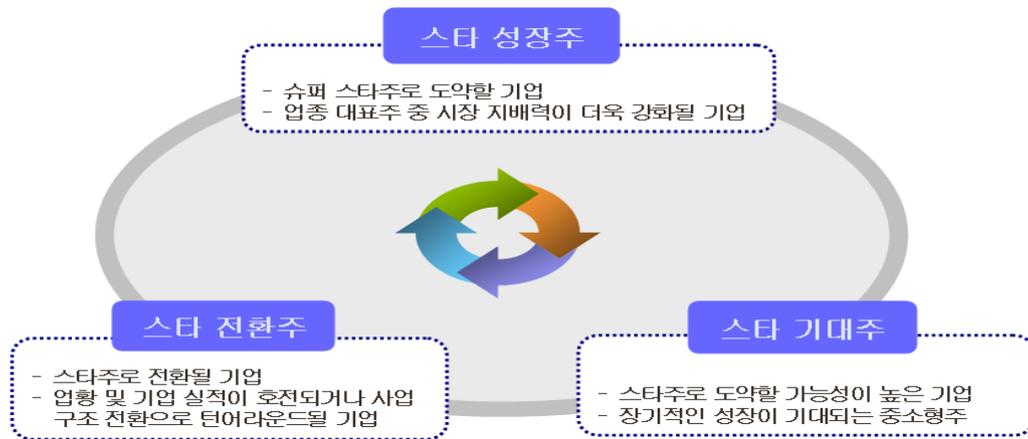
	<p>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종가의 총액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한다.</li> </ul>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li> <li>•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매1월이 되는 날 전에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li> <li>•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ul>	<p>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령 제80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li> </ul>	
<p>계열회사 발행주식</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권가액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능</p>	
<p>후순위채 투자</p>	<p>투자신탁채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주)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 스타 성장주의 발굴과 운용 전략

##### ◆ 업종 대표주로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기업에 투자

- 산업의 성장성, 산업 내 투자기업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장기적 의사결정
- 매출액이나 이익에 있어서의 성장이 전망되지만 Valuation 지표(P/E, P/B, EV/EBITDA 등)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
- 저 평가된 우량 개별종목 투자(잉여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며,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
- 예비 후보군에 대한 Screening 및 Valuation 에 근거한 중·장기 적정 가격을 산출
- 매수 후, 업황 및 영업 실적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반영

#### ■ 스타 전환주의 발굴과 운용 전략

##### ◆ 업황 및 기업 실적이 호전되거나, 사업구조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될 기업

- 업황 사이클의 변화나 기업의 사업구조 변화 등 기업의 질적 변화를 기준으로 이익 개선 기업 선정
- 주력 사업 재조정 및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턴어라운드 기업
- 재무구조 개선, 부실자산 및 계열사 처분 등의 구조조정 기업
- 적자 폭의 지속적 축소 및 잉여현금 창출로 인한 흑자 전환 기대 기업

#### ■ 스타 기대주의 발굴과 운용전략

##### ◆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형주

- 현재는 실적과 규모가 동종 업종 평균에 미달되지만, 핵심 경쟁력 보유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장기 투자
- 신기술 보유종목: 환경, 바이오, 신소재 등
- 재무제표의 안정성 고려(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 (2) 위험관리 전략

- 제반 운용규정 및 투자지침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사전적 운용 리스크 예방
- 시장동향 및 종목별 거래 분석을 통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자산 건전성 제고

(3) 참고지수(벤치마크) : KOSPI 90% + CD 금리 10%

- 주 1) 상기의 참고지수는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주 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참고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고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참고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참고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나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권에 투자하고, 40% 이하를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서 주권 및 채권 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주권 및 채권 등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연관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채무증권 등의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탁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권 및 채권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헤지)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지분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크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b>금리변동 위험</b>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무증권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신용위험</b>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위험</b>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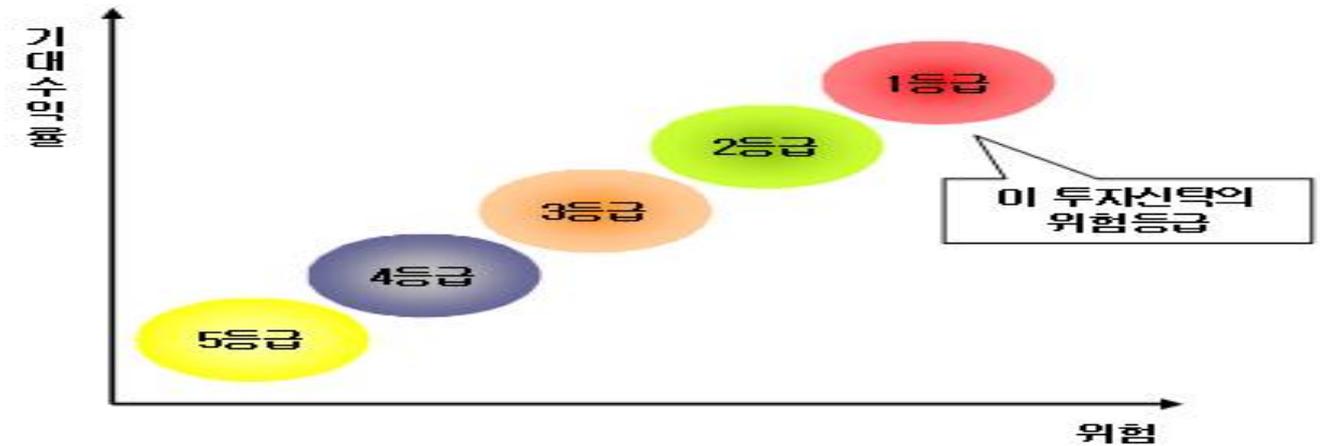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유동성 위험</b>	증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b>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오후 3시 이후 환매청구 시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 시와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b>환매연기 위험</b>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b>해지 위험</b>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노출되면서도 고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증권편입비율이 규약상 60%이상인 집합투자기구</li> <li>* 인덱스형 파생상품투자회사</li> <li>*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을 추구하지 않는 구조화된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ELF 등 파생상품)</li> <li>* 주식형주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재간접)</li> <li>* 해외투자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li> <li>* 항공기, 선박, 엔터테인먼트 등의 실물 및 관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SPC 등에 주로 투자하거나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li> <li>*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li> <li>*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li> </ul>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증권편입비율이 최대 50%이상인 집합투자기구</li> <li>* 신용등급 BBB-이하의 회사채(사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후순위채무증권, 투기등급채무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집합투자기구</li> <li>* 수익구조상 투자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ELF 등 파생상품)</li> <li>* 채권형 및 주식형 주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재간접)</li> </ul>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증권편입비율이 최대 50%이하인 집합투자기구</li> <li>* 신용등급 BBB-이상의 회사채(사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채권형 주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재간접)</li> </ul>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li> </ul>

5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	-------------------

주) 투자위험등급분류는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자체기준입니다.

##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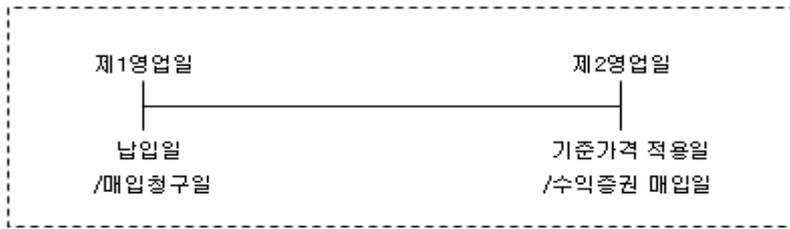
종류	매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됨
종류 A-e	온라인(Online) 가입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됨
종류 C1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종류 C-e	온라인(On-Line) 가입자
종류 C-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렛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나.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종류 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3) 매입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 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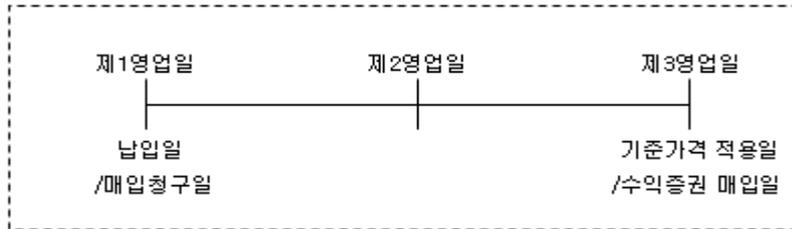
#### ①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3 시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15 시(오후 3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오후 3 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선취판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A 및 종류 A-e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종류 A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0.5%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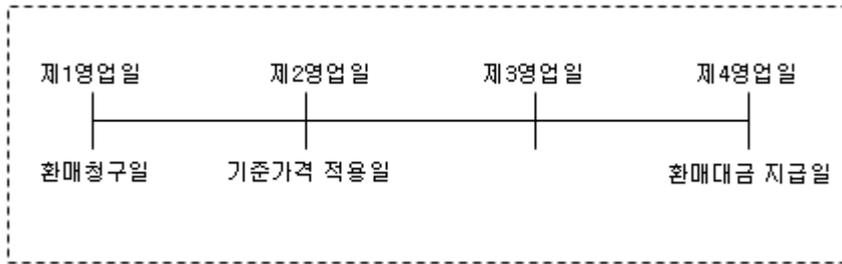
**나. 환매**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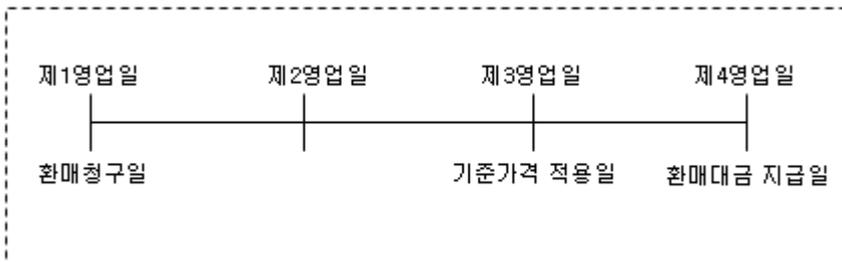
① 오후 3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3시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부과되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 A 및 종류 A-e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규약 제 25-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단,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종류 A/A-e	없음	-
종류 C1/C-e/C-W/C-F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 시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15 시(오후 3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오후 3 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 수익증권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ai.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권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파생결합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으로서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연판매보수(CDSC)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투자신탁**으로 수익자의 전환 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단, 투자신탁의 최초 가입 시에는 종류 C1 수익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자세한 적용기준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차 (최초가입)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총보수 (기타비용 제외)	연 2.25%	연 2.07%	연 1.93%	연 1.81%	연 1.71%

다만, 판매회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 종류 A, A-e, C-e, C-W, C-F 수익증권은 전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 기준
	종류A	종류A-e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W	종류C-F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없음								납입 시
환매수수료	없음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 시

#### (1) 판매수수료 차등부과 기준 및 내용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A 및 종류 A-e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종류 A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0.5%입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종류 C-F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매 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 해지 시
판매회사 보수	1.000	0.800	1.500	1.320	1.180	1.060	0.960	주5)	-	0.030	
신탁업자 보수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총 보수	1.750	1.550	2.250	2.070	1.930	1.810	1.710	주5)	0.750	0.780	
기타비용	0.014	0.015	0.015	0.006	-	-	-	0.014	-	-	발생 시
총 보수 · 비용	1.764	1.565	2.265	2.076	1.930	1.810	1.710	주5)	0.750	0.780	
증권 거래비용	0.502	0.495	0.881	0.493	0.234	-	-	0.49	-	-	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 대한 예탁 또는 결제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주 3) 증권 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총보수 · 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4) 증권 거래비용 및 기타 비용 외에 증권 일괄 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5) C-e 의 각 보수는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기타비용 0.014%로 가정)

기간	판매회사 보수	총 보수	총 보수 · 비용
2010.10.25 ~ 2011.10.24	1.14%	1.89%	1.904%
2011.10.25 ~ 2012.10.24	1.08%	1.83%	1.844%
2012.10.25 ~ 2013.10.24	1.02%	1.77%	1.784%

2013.10.25 ~	0.96%	1.71%	1.724%
--------------	-------	-------	--------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 원)

구분	가입 시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50	230	617	1,045	2,314
종류 A-e	50	210	553	932	2,058
종류 C1	-	232	732	1,283	2,920
종류 C-e	-	201	635	1,113	2,533
종류 C-W	-	78	247	433	986
종류 C-F	-	81	257	450	1,02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3) 수익증권 종류별로 총보수·비용 비율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다음과 같으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배당 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무증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권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 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과세상 투자자에게 불리한 사항

- 국내 상장주권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상장주권 등의 매매 및 평가손실이 채권이자, 주권배당, 비상장주권 평가, 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4)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7 기(2012.01.17.~2013.01.16.)	이촌회계법인	적정
제 6 기(2011.01.17.~2012.01.1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적정
제 5 기(2010.01.17.~2011.01.1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적정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목	제 7 기 2013.01.16	제 6 기 2012.01.16	제 5 기 2011.01.16
운용자산	179,794,270,628	135,639,095,227	49,965,091,463
유가증권	172,037,134,990	129,724,597,670	46,301,848,49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7,135,638	14,497,557	63,242,973
기타 운용자산	7,700,000,000	5,900,000,000	3,600,000,000
기타자산	1,577,029,698	690,447,864	1,199,239,356
자산총계	181,371,300,326	136,329,543,091	51,164,330,81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411,467,118	1,411,266,579	30,156,485,321
부채총계	3,411,467,118	1,411,266,579	30,156,485,321
원본	178,151,108,307	136,213,566,798	21,007,845,498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191,275,099	-1,295,290,286	0
자본총계	177,959,833,208	134,918,276,512	21,007,845,498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 7 기 2012.01.17.	제 6 기 2011.01.17.	제 5 기 2009.01.17.

	~ 2013.01.16	~ 2012.01.16	~ 2010.01.16
운용수익	1,196,847,080	-162,282,272	10,898,581,957
이자수익	430,458,805	234,537,305	36,614,404
배당수익	1,542,595,181	819,022,794	410,536,747
매매/평가차익(손)	-779,700,195	-1,241,642,170	10,447,967,437
기타수익	3,493,289	25,799,799	3,463,369
운용비용	9,951,496	10,162,264	3,480,009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3,870,936	1,864,704	452,408
기타비용	6,080,560	8,297,560	3,027,601
당기순이익	1,186,895,584	-172,444,536	10,895,101,948
매매회전율	197.63	198.12	237.25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1) 종류 A

(단위:백만 좌,백만 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10/01/17~2011/01/16	10,247	16,290	38,532	41,638	23,168	25,087	25,611	35,364
2011/01/17~2012/01/16	25,611	35,364	129,024	126,769	63,563	63,029	91,072	88,661
2012/01/17~2013/01/16	91,072	88,661	74,552	73,289	62,106	61,791	103,517	99,861

### 종류 A-e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10/01/19~2011/01/16	0	0	779	905	315	397	464	641
2011/01/17~2012/01/16	464	641	5,008	4,887	2,835	2,732	2,636	2,572
2012/01/17~2013/01/16	2,636	2,572	1,545	1,521	1,978	1,959	2,203	2,134

### 종류 C1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10/01/17~2011/01/16	170	186	6,804	8,087	1,115	1,295	5,860	8,053
2011/01/17~2012/01/16	5,860	8,053	25,087	24,793	14,343	14,154	16,604	16,085
2012/01/17~2013/01/16	16,604	16,085	5,477	5,402	20,196	19,898	1,885	1,801

### 종류 C-e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	-------	--------	--------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10/01/17~2011/01/16	36	40	3,716	3,949	1,563	1,560	2,189
2011/01/17~2012/01/16	2,189	3,017	7,010	6,898	3,790	3,770	5,410	5,261
2012/01/17~2013/01/16	5,410	5,261	6,595	6,417	9,265	9,094	2,740	2,639

### 종류 C-W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11/03/11~2012/01/16	1,050	1,037	2,328	2,451	0	0	3,378	3,479
2012/01/17~2012/03/19	3,478	3,579	0	0	3,478	3,691	0	0
2012/03/20~2013/01/16	0	0	3,500	3,500	0	0	3,500	3,342

### 종류 C-F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11/03/03~2012/01/16	5,690	5,831	8,505	9,825	3,030	3,264	11,165	11,803
2012/01/17~2013/01/16	11,165	11,803	103,654	105,752	65,445	66,223	49,373	49,405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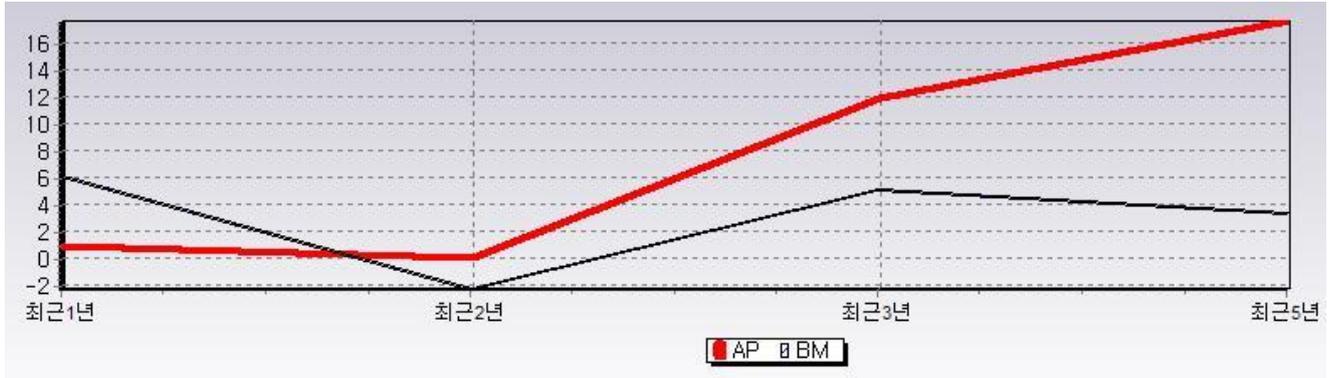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펀드명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최초 설정일
	2012/01/17 ~2013/01/16	2011/01/17 ~2013/01/16	2010/01/17 ~2013/01/16	2008/01/17 ~2013/01/16		
투자신탁(전체)	-0.95	17.91	44.29	21.86	19.94	2006/01/17
종류 A	-0.91	-1.78	10.02	16.17	15.94	2006/01/17
종류 A-e	-0.71	-1.59	0	0	10.17	2010/01/19
종류 C1	-1.41	-2.27	9.48	0	11.21	2009/08/13
종류 C-e	-0.97	-1.87	9.88	0	12.11	2009/07/29
종류 C-W	-3.55	0	0	0	-0.36	2011/03/11
종류 C-F	0.06	0	0	0	3.04	2011/03/03
비교지수	6.14	-2.31	5.11	3.36	5.01	

- 주 1) 참고지수 : KOSPI 90% + CD 금리 10%
- 주 2) 집합투자규약 부칙(4) 제 2 조에 의거하여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은 종류 A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을 종류 A 수익증권의 수익률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 3) 상기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이며,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4) 상기 수익률은 2013년 1월 16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 5) 상기 그래프는 전체 클래스 중에 대표 클래스인 종류 A 수익증권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최초설정일
	2012/01/17 ~ 2013/01/16	2011/01/17 ~ 2012/01/16	2010/01/17 ~ 2011/01/16	2009/01/17 ~ 2010/01/16	2008/01/17 ~ 2009/01/16	
투자신탁(전체)	0.85	-0.95	40.37	116.07	-25.54	2006/01/17
종류 A	-0.91	-2.65	38.08	113.49	-25.54	2006/01/17
종류 A-e	-0.71	-2.46	38.02	0	0	2010/01/19
종류 C1	-1.41	-3.12	37.41	9.72	0	2009/08/13
종류 C-e	-0.97	-2.76	37.82	12.07	0	2009/07/29
종류 C-W	-3.56	3	0	0	0	2011/03/11
종류 C-F	0.07	5.71	0	0	0	2011/03/03
벤치마크	6.16	-10.1	21.7	44.69	-2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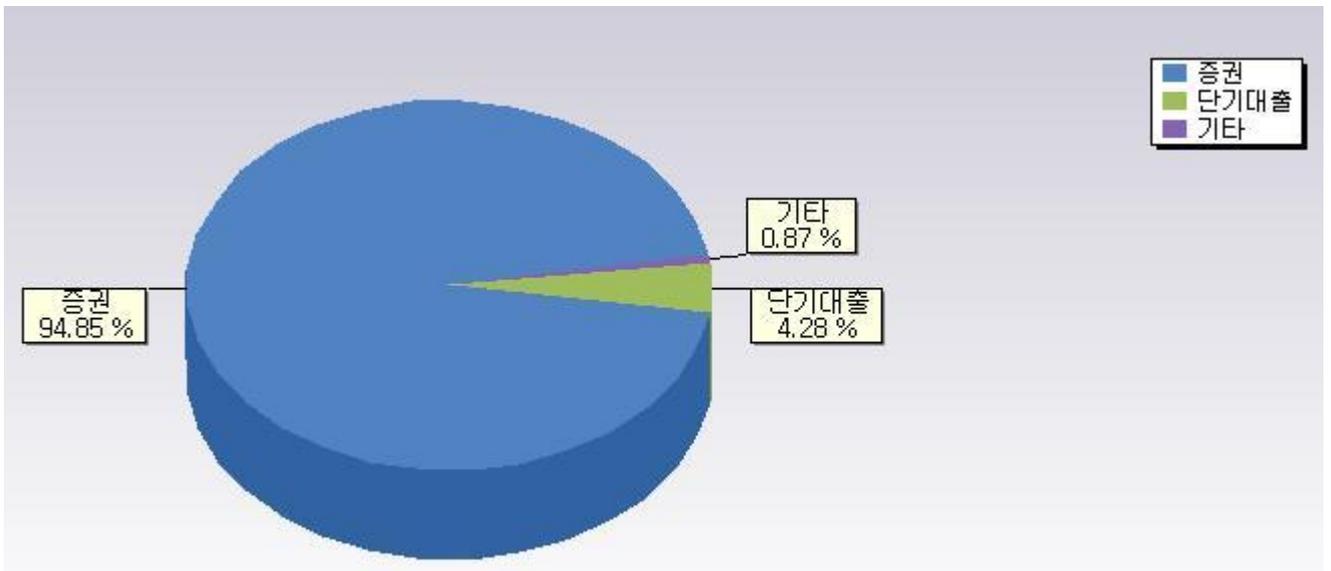
- 주 1) 참고지수 : KOSPI 90% + CD 금리 10%
- 주 2) 집합투자규약 부칙(4) 제 2 조에 의거하여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은 종류 A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을 종류 A 수익증권의 수익률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 3) 상기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이며,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4) 상기 수익률은 2013년 1월 16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단위:억 원,%, 기준일: 2013.01.16.)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대한	1701.52	0	0	18.86	0	0	0	0	0	77.58	15.76	1813.71
민국	93.81	0	0	1.04	0	0	0	0	0	4.28	0.87	100
자산	1701.52	0	0	18.86	0	0	0	0	0	77.58	15.76	1813.71
합계	93.81	0	0	1.04	0	0	0	0	0	4.28	0.8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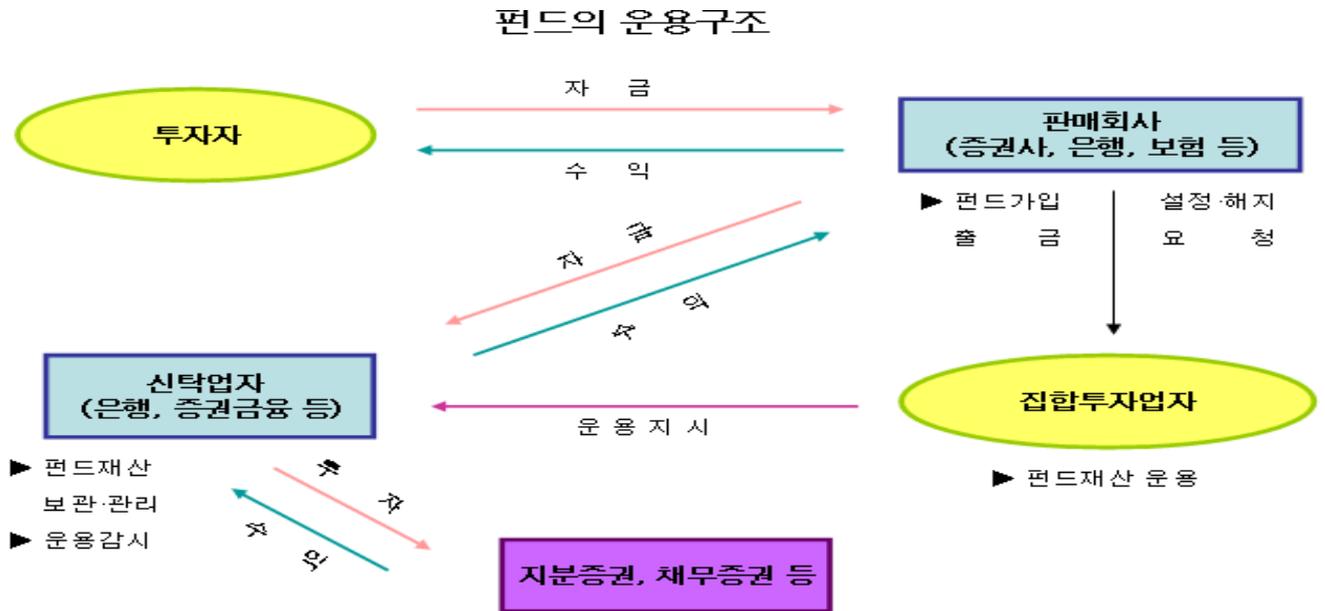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업종	시가평가액	순자산대비비중
IT H/W	85.88	4.83
IT S/W & SVC	15.99	0.9
금융업	24	1.35
기계	31.04	1.74

사업서비스	46.82	2.63
서비스업	256.04	14.39
운수장비	194.09	10.91
운수창고	18.9	1.06
유통	20.69	1.16
유통업	65.32	3.67
음식료품	90.85	5.11
전기,전자	537.24	30.19
전기가스업	98.22	5.52
전문기술	7.47	0.42
제조	87.55	4.92
종이,목재	22.3	1.25
화학	99.12	5.57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마이애셋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5층 (연락처 : 02-3774-6114, www.mai.co.kr)
회사 연혁	-1987.11. 법인 설립 -1999.12. 자산운용업 등록,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으로 상호변경 -2000.06. 투자일임업 등록 -2007.06. 마이애셋자산운용(주)으로 상호변경
자본금	157.7 억
주요 주주현황	에스에이앰프라퍼티(39.39%), 김은숙(23.98%)

### 나. 주요 업무

#### ■ 주요 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

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외환펀드서비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6기 '12.3.31.	25기 '11.3.31.	항목	26기 '11.4.1.~ '12.3.31.	25기 '10.4.1.~ '11.3.31.
현금 및 예치금	1,082	6,738	영업수익	11,173	11,034
유가증권	3,109	746			
유형자산	326	149	영업비용	9,793	19,634
기타자산	12,225	12,332			
자산총계	16,742	19,965	영업이익	1,380	(8,600)
예수부채	92	83	영업외수익	28	1
기타부채	6,505	13,296	영업외비용	140	230
부채총계	6,597	13,379	경상이익	1,268	(8,829)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6기 '12.3.31.	25기 '11.3.31.	항목	26기 '11.4.1.~ '12.3.31.	25기 '10.4.1.~ '11.3.31.
자본금	17,774	15,774	법인세 등	4	1,183
이익잉여금	(8,158)	(9,422)			
자본조정	(1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40	234			
자본총계	10,145	6,586	당기순이익	1,264	(10,012)

라. 운용자산 규모

(단위: 억 원, 기준일: 2013.02.28.)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수탁고	2,537	3,252	60	229	1,913	1,242	432	-	9,66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1588-1111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hanabank.com">http://www.hanabank.com</a>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금융투자상품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I.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II. 법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III. 법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IV. 법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V. 법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VI.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VI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제248호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외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 번지 한외빌딩 9 층 02-6714-4615
회사연혁 등	2003. 04. 01. 설립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연락처	02-3215-1400	02-298-3900	02-399-3350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npricing.co.kr	www.koreaap.com

나.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및 필요한 경우,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종류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신탁업자의 변경, 환매 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결산서류는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입니다.

#####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 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정관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 총회의 결의 내용 등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증권거래	1) 선정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li> <li>-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li> <li>-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li> <li>-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li> </ul>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li> <li>-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li> <li>-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li> </ul>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li> <li>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li> <li>③ 마케팅 비용</li> <li>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li> </ol>

	⑤ 투자운용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b>금융투자상품</b>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b>집합투자</b>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b>펀드</b>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b>투자신탁</b>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b>수익증권</b>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b>순자산</b>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b>증권집합투자기구</b>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권,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b>개방형</b>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b>추가형</b>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b>종류형</b>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b>기준가격</b>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 시 적용됩니다.
<b>자본이익</b>	펀드 운용 시 주권 및 채무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b>배당소득</b>	펀드 운용 시 주권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b>보수</b>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b>선취수수료</b>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b>환매수수료</b>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b>설정</b>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b>해지</b>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b>투자자총회</b>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b>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b>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b>원천징수</b>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b>비교지수</b>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